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11.

제 안 자 : 국토교통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영유아 동반 차량 외 임산부 탑승 차량도 포함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상주차장 만이 아니라 노외·부설주차장에도 설치·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전용주차구획 설치 의무는 삭제하였으며,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하고 그 외 체계·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이하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이라 한다)

안 제10조제1항제3호 중 “영유아동반 자동차를”을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을”로 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 또는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의”를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또는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의”로, “화물자동차 또는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를 “화물자동차,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또는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12조의3제3항 중 “,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영유아동반 자동차”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한다.

제19조에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⑰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에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을 위한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를 삭제하고, 본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 ----- ----- ----- -----. ----- ----- ----- -----.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 -----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개정안과 같음)
<신 설>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이 탑승한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이하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를 위한 전용 주차구획의 지정 ② · ③ (생략)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① 노외주 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 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 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u>노외주차 장을 설치한 경우,</u> <u>해당 노외주차장에</u> <u>화물자동차 또는</u> <u>승용차공동이용 자</u> <u>동차의</u> 주차공간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u>승용차공동이용 자동</u> <u>차 및 영유아동반 자</u> <u>동차를</u>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현행과 같음)	----- ----- ---영유아동반 자동 차등을----- ----- ② · ③ (개정안과 같음)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① 노외주 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 우에도 또한 같다. ② ----- ----- -----<u>노외</u> <u>주차장에 화물자동</u> <u>차, 승용차공동이용</u> <u>자동차 또는 영유</u> <u>아동반 자동차등의</u> -----
--	--	--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u>화물자동차 또는 승용차공용이용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u>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 <u>화물자동차, 승용차공용이용 자동차 또는 영유아동반자동차등의 주차를 위한 구역</u>을 지정하거나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 ----- ----- ----- -----.
③ ~ ⑥ (생략)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u>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u>를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환경친화적 자동차</u> 및 영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 ----- -----<u>및 환경친화적 자동차</u>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여
야 한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① ~
⑯ (생략)
<신설>

유아동반 자동차-----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현행과
같음)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① ~
⑯ (현행과 같음)
⑰ 특별시장·광역시
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
설주차장에 영유아
동반 자동차등을
위한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영유아동
반 자동차등의 주
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하
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구
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부칙 <u>제1조(시행일) 이 법</u> <u>은 공포 후 6개</u> <u>월이 경과한 날</u> <u>부터 시행한다.</u> <u>제2조(노외주차장의</u> <u>전용주차구획 설</u> <u>치에 관한 경과</u> <u>조치) 이 법 시행</u> <u>당시 제12조의3</u> <u>제3항의 개정규</u> <u>정에 따라 노외</u> <u>주차장에 영유아</u> <u>동반 자동차 전</u> <u>용주차구획을 설</u> <u>치하여야 하는</u> <u>노외주차장 관리</u> <u>자는 이 법 시행</u> <u>이후 1년 이내에</u> <u>영유아동반 자동</u> <u>차 전용주차구획</u> <u>을 설치하여야</u> <u>한다.</u>	<u>의 조례로 정한다.</u> 부칙 <u>이 법은 공포한 날</u> <u>부터 시행한다.</u>
--	---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84
----------	------

발의연월일 : 2024. 7. 4.

발 의 자 : 김선교 · 구자근 · 김상훈
최수진 · 이철규 · 김석기
김위상 · 김정재 · 박정하
서일준 의원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되,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자녀 양육가정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강조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혜택으로서 자녀 양육가정에도 주차장 이용상의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주차장에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친육아환경 조성 및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4호 신설 등).

※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영유아 동반 차량 외 임산부 탑승 차량도 포함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상주차장 만이 아니라 노외·부설주차장에도 설치·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전용주차구획 설치 의무는 삭제하였으며,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하고 그 외 체계·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이하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를”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및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을”로 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 또는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의”를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또는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의”로, “화물자동차 또는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를 “화물자동차,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또는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9조에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⑰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에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을 위한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설></u> ② ~ ④ (생략)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이하 “영유아동반자동차등”이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① ----- ----- ----- ----- -----

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한조치와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

1.2. (생략)

3.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
동차와 경형자동차, 환경친화
적 자동차 및 승용차공동이
용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
구획의 지정

② · ③ (생략)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①
(생략)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
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을 설치한 경우, 해당 노외주차
장에 화물자동차 또는 승용차
공동이용 자동차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화물자동차 또는 승용차공
동이용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
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

-----.

1.2. (현행과 같음)

3. -----

-----환경친화
적 자동차,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및 영유아동반 자동
차등을-----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노외주차장
에 화물자동차,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또는 영유아동반 자동
차등의-----

-----화물자
동차,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또는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하거
나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① ~ ⑫ (생략) <u><신 설></u>	----- -----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① ~ ⑫ (현행과 같음) <u>⑬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에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을 위한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
---	--